

제·개정 및 폐지 예고문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3. 28.

대한체육회장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024.2.6.)의 반영
- 자격정지 등으로 징계 중인 자가(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징계대상에 해당함을 규정에 명시

2. 주요내용

- (제3조) 기능 추가
 - (제6호) 징계 중인 자(자격정지 등)의 징계사유 추가 발생 시 징계대상에 해당함을 명시
 - (제11호) 체육회 정관 43조에 따라, 체육회 회원단체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추가
- (제25조) 징계사유 및 대상
 - (제6항)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 관할 사항
 - (제7항) '스포츠클럽'에 대한 징계 관할 추가
- (제31조) '징계의 정도 결정' 추가
 -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채용 비위'를 추가
- (제36조) '징계의 효력 등' 명확화
 - 재심의 사안의 경우, 징계 효력 발생 시점이 원처분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명시

3. 의견제출

- 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의 제정(안) 및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

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이유
-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 law@sports.or.kr

다. 의견제출방법: 이메일

□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기능) 1.~5. (생략) 6.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u>및 경기인</u>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p> <p>7~10. (생략) <u>11. <신설></u></p>	<p>제3조(기능) 1.~5.(생략) 6.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u>대한체육회 경기인</u>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 (<u>징계 중인 자 포함</u>)의 징계에 관한 사항</p> <p>7~10.(생략) <u>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시정요구 등을 요청한 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중인 자 (자격정지 등)의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대상에 해당함을 명시 • 체육회 정관 43조에 따라, 위원회 기능 일치
<p>제25조(징계사유 및 대상) 1.~7. (생략) <u>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p> <p><u>9. <신설></u></p> <p>② <u>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u></p> <p>⑥ <u>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은 시·도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u></p>	<p>제25조(징계사유 및 대상) 1.~7.(생략) <u>8. <신설>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7호의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p> <p><u>9.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 3까지에 준하는 사건</u></p> <p>② <u>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 단체의 위원회가 관할하되, 별표 1의 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 단체의 재심의 기관(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회원 시·도체육회)의 위원회가 관할한다. 다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제4항 및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할한다.</u></p> <p>⑥ <u>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은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6호에 따른 징계사유 추가 • 국민권익위원회 고사항 (2024.2.5.)

현행	개정(안)	비고
<p><u>항에 따라 처리한다.</u>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u>처리한다.</u></p> <p>1. <u>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2. <u>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⑦ <u>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부경기부 징계사건은 회원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u></p> <p>1. <u>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2. <u>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u>관할한다.</u></p> <p>1. <u>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2. <u>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⑦ <u>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의 징계사건은 회원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직접 관할한다.</u></p> <p>1. <u>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2. <u>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 ‘스포츠클럽’ 징계관할 명시</p>
<p>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p> <p>① (생략)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u>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u> 감경할 수 없으며, (이하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u>2배 이상으로</u>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p>	<p>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p> <p>① (생략)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u>제3호 중 채용비위 사건</u>,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이하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u>2배 이상으로</u>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p>	<p>•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2024.2.5.)</p> <p>• 제3조 6호에 따른 징계사유</p>
<p>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③ <u>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u></p>	<p>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③ <u>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징계 처분일로 소급한다.</u></p>	<p>• ‘권익 침해’ 사안의 재심의 처분 효력 발생일의 명시화</p>
<p>부칙(2019. 1. 31.) <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p>	<p>부칙(2019. 1. 31.) <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p>	<p>• 문구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을 거쳐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을 거쳐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9. 12. 20.)</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9. 12. 20.)</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정비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0. 7. 29.)</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0. 7. 29.)</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정비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0. 10. 23.)</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0. 10. 23.)</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정비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 2. 4.)</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 2. 4.)</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정비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 7. 9.)</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 7. 9.)</p> <p><u>(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정비
<u><신설></u>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4. 00. 00.)</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